

「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(B2B) 사업」 사회적경제 상품 유통지원기관 모집

기본법-개별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촉진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판로환경 조성을 위한 「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(B2B) 사업」에 참여 할 사회적경제 상품 유통지원기관(이하 '유통지원기관'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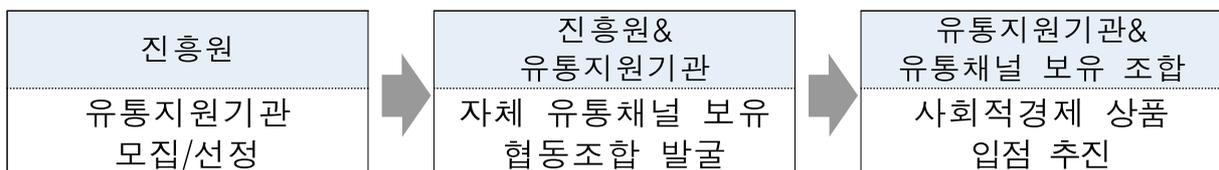
2019. 8. 13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1 |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「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(B2B) 사업」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'19. 11. 29.(금)까지
- (사업예산) 금 41,000,000원(금사천일백만원 / 부가가치세 포함)
- (모집대상) 유통채널 발굴 및 사회적경제 상품 유통이 가능한 협동조합 또는 (예비)사회적기업
- (사업내용) 유통지원기관을 통해 생협 등 자체 유통채널을 보유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,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 상품 연계 추진

<참고: 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 사업 추진(안)>



* <연계>란? 유통채널과 사회적경제 상품 매입(또는 위탁) 계약 체결, 유통채널 관리·운영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품전 개최 등을 말함

□ (지원규모) 1개 기관 선정, 최대 41,000천원 지원

- 지원금은 선금 60% 이내(신청 시), 잔금 40%로 분할하여 지급
 - * 선금은 선금사용계획서 검토 후, 잔금은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,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□ 지원항목

- 사회적경제 상품전 기획·구성·운영 비용
- 사회적경제 기업(상품) 관리비용
-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디렉터, MD, 세일즈 스태프 등 인력비용
- 기타 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된 사업 추진비용

□ 유통지원기관 주요역할(의무)

- 연계 가능한 협동조합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
- 사회적경제 기업·상품 전반적인 관리(소싱, 물량조절·조달 등)
- 유통채널 보유 협동조합-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(납품가 조율 등)

□ 유통지원기관 성과목표

- 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55개소(누적) 이상 유통채널 연계
- ②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된 목표 매출액 달성
- ③ 협동조합 상호거래 대상 확대를 위해 '18년 사회적경제 상품 연계 이력이 없는 유통채널 1개 이상 발굴·연계

<참고: 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(B2B) 사업 추진 현황>

- '18년, 개별법협동조합(농협, 생협), 협동조합 연합회와 협력하여 협동조합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 기업(40개소) 연계 함
- '19년, 전년도 연계 이력을 보유한 농협, 생협 등 협동조합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 상품 지속(추가) 연계 방안을 모색
 - 현재(8월 초순), 농협중앙회 임직원대상 상품전 개최('19.8월 중) 준비 및 한살림생협 사회적경제 상품전 개최('19.11월 중) 방안을 논의 중
 - 여타 개별법협동조합 및 연합회에도 사회적경제 상품 연계가 가능토록 유통지원기관을 통해 유통채널 지속 발굴·연계가 필요

- (우대조건) 아래의 2가지 요건별 충족 여부에 따라, 평가 시 각 평가위원별 배점(100점)에 가점(3점)을 적용
 - 유사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기관일 경우, 가점 3점
 - (증빙방법) 사업 수탁기관에서 발급하여 준 실적증명서 제출
- 지원 제외 대상
 - 사업 참여대상이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 될 경우, 선정·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지원 제외 대상 해당의 판단 기준은 본 공모 신청 일자에 준함
 -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인 경우
 -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인 경우

2 | 모집 안내

- (신청기간) 공고일 ~ '19. 8. 27.(화) 10:00까지
- (신청방법)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(제출 마감시간 엄수)
 - ☒ **coop@ikosea.or.kr**
 - * (메일제목) 유통지원기관 공모 신청_○○○기관(☞기관명 기재)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 서류	비고
1	신청서/사업계획서/예산사용계획서 각 1부	[붙임 1~3] 양식
2	개인정보 수집, 조회,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※대표 외 담당자가 있을 경우 대표 및 담당자 각 1부씩 작성	[붙임 4] 양식
3	사업자등록증 1부	원본대조필 날인
4	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확인용 서류 ※ 협동조합 신고확인증,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, 사회적기업 인증서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	-
5	참가자격 우대조건관련 증빙 자료	우대조건별 상이

3

평가 안내

□ (일시 및 장소) 신청서류 제출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

* (대면평가 예정일) '19. 8. 28.(수) ~ 9. 2.(월) 中 진행 예정

** (대면평가 예정지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소재)
또는 소셜캠퍼스 온 경기(분당선 모란역 인근)

□ (평가방법) 대면평가 원칙

○ 참여기관이 제출 한 서류(신청서/사업계획서/예산사용계획서)를 통해 질의응답으로 평가를 진행, 본 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

-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 된 평가위원의 협의를 통해 평가관련 주요내용 협의 및 확정

- 대면평가 시 평가장에는 참여기관 소속 대표자 또는 신청담당자 1명만 참석하여 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, 추가 배석은 불가함

○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(평가점수 도출방법) 우대조건 가점이 적용 된 참석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값 도출

- (평가기준) 사업 제안내용, 유통지원기관 추진능력, 사업효과 등

○ 대면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받기를 거부 한 경우,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선정결과 안내 방법

○ 대면평가 결과는 선정 된 기관에 한하여 문자 메시지(LMS)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

* 평가 완료 후 비(比)선정 기관에게는 선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

4 | 정산 및 기타 사항

□ 정산 관련 사항

- 사업 종료 후 선정기관(유통지원기관)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자료* 검토 이후 정산

*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전표, 통장 거래 내역 등 예산 사용 계획서에 따라 사용 된 지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- 정산 처리 중 아래의 경우 발생 시, 진흥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1) 자산취득 물품 구입, 주류·담배 구입, 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사용, 주류가 포함 된 식대, 과도한 교통비(대리비, 택시비)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 될 경우

2) 진흥원과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지출 항목일 경우

- 결과보고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필히 포함시켜야 하므로 사업 추진 시 중요 자료를 상시 보관하고, 보고서 양식은 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양식에 준함

1) 사업 일정, 추진 방법 등 사업 전반적인 운영 내용(상세히 기재)

2) 사업 운영 성과(정량적 성과, 정성적 성과 기재)

3) 유통채널에 연계 한 사회적경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

4) 사업 운영관련 자료 일체

* 사업 운영관련 사진(행사장 전경, 현수막, 토론 현장 등)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 된 콘텐츠 등 사업 운영관련 자료 모두 제출

- 지원한도는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금액임

- 사업 운영관련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증빙자료는 전자메일(✉ coop@ikosea.or.kr)을 통해 제출

□ 유의 사항

-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인용자료 및 데이터 작성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제출 된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신청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됩니다.
-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*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**는 평가대상 제외 및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- 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허위 제출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때 사업관련 추진비용은 허위 제출 기관이 부담하여야 함
 - **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
-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❖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

담 당 부 서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
담 당 자	양소연 대리 ☎ 031-697-7744 황병준 주임 ☎ 031-697-7747
전 자 메 일	☐ coop@ikosea.or.kr